

#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선수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 2014. 09. 25.  
개 정 2017. 07. 14.  
개 정 2020. 10. 29.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대한장애인사격연맹(이하 “연맹”이라 한다) 선수위원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운영규정 제16조 및 연맹 정관 제31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선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 <개정 ‘20.10.29.>

**제2조(목적)** 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,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패럴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연맹에 등록된 선수에 적용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
1. 패럴림픽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관련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패럴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 <개정 20.10.29.>
2.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또는 단체 선수위원회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
3. 선수의 권익 보호,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4. 선수등록 및 경기분야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제시
5.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
6. 은퇴선수 프로그램 개발 등 은퇴선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7. 연맹 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
8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9.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1~2인
3. 위원 18인 이내(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) <개정 20.10.29.>

② 위원은 정기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각 연맹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하며, 위원 선임 년도 기준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.10.29.>

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연맹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**제5조의2(위원장의 선출)** ① 위원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며,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자 중 최  
다 득표자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.10.29.>

**제6조(위원의 위촉)** 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, 부위원장이  
2인일 경우에는 선임 순서를 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.10.29.>

② 위원은 시·도지부에서 선출된 선수위원장을 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7조(회장 선거인 선출)** ① 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선거인 3인을  
선출하고 위원장과 함께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으로 추천해야 한다. <개정  
20.10.29.>

② 제1항의 선거인은 연맹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, 새롭게 선출하  
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.

**제8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
에는 부위원장 선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9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 
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연맹 정관 제12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한 선거인은 임  
기 시작 전이라도 제7조 제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. <개정 ‘20.10.29.>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 
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 
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  
단되는 경우
4.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5. 소속 시·도지부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 <개정 20.10.29.>

**제11조(회의소집)** 위원장은 연맹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12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4조(시·도지부 선수위원회 설치 의무) ① 각 시·도지부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각 시·도지부의 선수위원회운영규정은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 (2017. 07. 1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10. 2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